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4명(5급 2명, 6급 2명)은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설되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정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 및 업무량 확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6항 중 “2026년 2월 26일”을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① 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
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 간 연계를 위한
통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 중 “2026년 2월 26일”을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별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4항 관련)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28일)

총계	7
일반직 계	7
3급 또는 4급 이하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제17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⑤ <삭 제>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⑥ ----- ----- -----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 설>	제18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① 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 간 연계를 위한 통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3